

[별첨1]

『기술 개발 확산용 플랫폼 개발』
과업지시서

2020. 9.

대구경북과학기술원

목 차

I . 과업의 개요	1
II . 과업의 주요내용	2
III . 행정사항 및 기타	3
IV . 성과품작성 및 제출	5
V . 과업수행 예정공정	6
VI . 과업수행자 요건	7

I . 과업의 개요

1. 과업의 명칭 : 기술 개발 확산용 플랫폼 개발

2. 과업의 배경

- 레이다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접근성 확보

3. 과업의 목적

- 레이다 기술 소개를 위한 플랫폼 구축

4. 과업의 기간 및 비용

- 개발기간 : 계약일로부터 14일

- 개발비용 : 100만원

5. 과업의 내용적 범위

- 레이다 기술 소개를 위한 플랫폼

- ✓ 그래픽 기반의 레이다 기술 소개를 위한 플랫폼 SW 코드

II. 과업의 주요내용

- 기술 개발 확산용 플랫폼 개발
 - 프로젝트 결과 출력
 - 새로운 사항 업데이트 결과 출력

- 최종 성과물
 - 플랫폼 SW 코드
 - 최종 보고서

※ 최종 성과물 목록을 반드시 수행계획서에 포함 시킬 것

III. 행정사항 및 기타

1. 행정사항

- 본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4일로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하며, 전문 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의 수행상 필요할 경우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-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기타 자료 등은 본 업무 와 관련 없는 일에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, 대여할 수 없다.
-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구경북 과학기술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-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, 자료 및 보충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 또한,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하여 발주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정·보완하여야 한다.
-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·작성된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고, 과업수행 완료시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, 발주기관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

단, 제출된 양식의 Form은 수급인(과업수행업체)에게 저작권을 가지며 발주처에서 제공된 양식은 발주기관에게 저작권이 있다.

- 수급인의 판단 잘못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부담한다.

2. 관련서류제출

-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, 참여연구진, 예정공정표,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 수행과 관련된 세부추진 일정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IV. 성과품 작성 및 제출

1. 성과품 작성

-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생산 및 획득한 보고서 등의 산출 문서 및 기술 문건과 데이터 파일 등의 제출 자료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승인을 거쳐 용역 완료에 최종 납품물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대구경북 과학기술원에 납품되어야 한다.

2. 성과품 종류 및 제출부수

항 목	규격	수량	비 고
최종 개발품(소프트웨어)		1 copy	
최종보고서	A4	1 부	인쇄 및 doc 또는 hwp 원본 파일

V. 과업수행 예정 공정

- 개발기간: 계약일로부터 14일
- 일정(개략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추후 개발계획 승인 시 확정)

과업내용	과업기간/(주)	1 주	2 주
기술 개발 확산용 플랫폼 개발			
검증			

VI. 과업수행자 요건
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단시일에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보유한자이어야 한다.
- 과업수행 응모 시 과업수행 희망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책임자의 과업상세내용 확인을 득한 후 공모에 응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행기간 내 본 과업의 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.
- 참여기관은 본 과업에 수행 시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